

상하류 주민의 의식현황과 협조체계 구축방안

손진상 (안동대학교 교수)

1. 상하류지역을 둘러싼 갈등

우리나라의 물이용현황에 따르면 수자원총량 연간 1,276억톤의 57%인 731억톤이 하천이나 강으로 연중 흐르면서 직접 취수 161억톤, 댐이용취수 133억톤 등 331억톤을 이용하고 있다. 생활용수 73억톤, 공업용수 29억톤, 농업용수 158억톤, 유지용수 71억톤으로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이용량변화추이를 보면 1965년 51억톤, 1980년 153억톤, 1990년 249억톤, 현재 331억톤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되는 용수 수요를 충족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으로 연중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간은 1/5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하천이나 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여야 하고 댐건설, 수질오염, 각종규제 등 상하류간 갈등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하류간 물분쟁도 여러 곳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1 수질대책을 둘러싼 갈등사례

하천의 심각한 오염은 지역간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하천의 오염원은 대부분 상류에 있으나 오염의 피해는 하류 지역 주민이 입는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상류 주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하천이 오염되면 상류에서 직접 끌어다 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가중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이 있는 상류 지역에서의 오염원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이며 상류 지역의 규제 강화로 입게 될 피해를 상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부의 낙동강 수질대책을 놓고 대구지역과 부산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역 주민들은 특히 지역 경제의 숙원인 위천공단 건립 문제를 오염총량제와 맞물리게 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공장 상업시설 등 개발사업을 연간 오염발생량에 맞춰 진행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경제가 더욱 움추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낙동강 하류 부산 지역의 경우 정부가 오염총량제 도입이라는 구실로 위천공단 건립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 주민들은 상류에 위천공단과같은 대규모 오염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쏟아내며 정부 대책에 불만을 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낙동강 수계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상하류지역 주민 모두가 불만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오염원인자 부담을 주장하는 반면 상류 주민들은 수변구역 지정 등 재산권침해는 침해대로 받으면서 부담금까지 물게 됐

다며 반발하고 있다.

1.2 댐건설을 둘러싼 갈등사례

댐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댐건설은 대규모 수몰지를 수반하기에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고, 그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댐저수지 주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이 수반되고 있다. 댐건설은 수몰지의 문화와 전통을 해체시키고 있고 지가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의 지천천하류에 댐건설을 추진하자 청양군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청댐 등 기존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에 따른 수원지 확보와 홍수피해방지를 위해 지천천 하류에 중규모댐을 건설하여 충남중서부 일원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양군민들은 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지역인 청양읍일대는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청양첨단산업기지 건설계획도 백지화될 우려가 크며 축산농민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빈약한 군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댐건설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1.3 용수배분을 둘러싼 갈등사례

공사기간만 10여년이 걸려 완공된 용담댐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다툼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담수를 하지 못해 계획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때문에 전주주민들은 대신 농업용수용 댐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물 관리에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 용담댐은 최근 초당 3.5t씩 물이 유입되고 있지만 담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 이 댐의 현재 담수량은 전체 용량(8억1천여만t)의 10%도 안 되는 6천여만t, 전주권 광역상수도용으로 총 1조5천여억원이 투자돼 지난해 말 완공된 용담댐은 2001. 7월부터 하루 15만t씩, 연말부터는 70만t씩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물 배분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대전

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이 갈등을 빚으면서 담수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민 등은 용담댐 대신 농업용수용으로 조성된 대아댐 물을 계속해 끌어다 먹어야 한다. 대아댐 주변 농민들로서는 용수량이 그만큼 줄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용담댐 담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충청권이 물 배분 증대를 요구하며 담수를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는 댐 하류인 금강으로의 방류량을 본래 계획된 초당 5t에서 12.4t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측은 댐 설계·축조 때의 전북 인구 추정치(2021년 3백80만명)가 현 실정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잡혀 있고, 댐 담수가 시작되면 금강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수몰민 이주비로 수백억원을 자체 부담해 만든 댐의 물에 대해 충청권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한강수계 사례로 본 상하류 갈등해결 과정

99년부터 시행중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정착과정을 살펴보면서 상하류갈등 해결을 위하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뢰와 협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을 시행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2.1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 개요

- 수변구역 설정·관리
 -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k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류 지역은 5백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 팔당특별지역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 숙박시설, 목욕탕, 축산시설, 공장 등의 신설 금지, 상류지역 수변구역에서는 공장 등 오염업소 신설 제한
 - 수변구역내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오수 배출기준을 현행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0ppm에서 2002년부터 10ppm으로 규제 강화

- 수변구역내 토지, 주민과 협의매수해 녹지대 조성

- 기존 취락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예정)지역,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등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

- 수변구역내 불법건축물 내년 상반기중 완전 철거
□ 보안림 지정

- 남·북한강, 경안천 및 1차 접속지류 양안 5km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 오염총량제 실시

-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도입, 연차적 확대

□ 임진강권역 대책

-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 및 한탄강 상류 철원군 일원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 (5개시군, 25개읍면, 1천2백71.9km²)

- 임진강 신천유역 공해공장을 집단화 단지로 이전

□ 팔당댐하류(잠실권역) 수질관리 대책

- 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유선행위 등 오염행위를 일절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국·공유지 민간불하 제한

- 국·공유지 불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엄격히 제한

□ 축산시설 신규입지 제한,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촉진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모든 축산시설의 신규 입지 및 증설을 금지(기존면적내 개·보수는 허용)

- 팔당호권역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종합대책 강구

□ 환경농업 농경지 면적 확대

- 2004년까지 환경농업 실천면적을 1만6천ha로 확대

- 환경농산물 차별화 위한 포장재 지원, 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환경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 하류지역 물 사용자로부터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

□ 발생 오염물질 삭감

- 2005년까지 2조6천억원 투자, 하수처리율을 현재 58.8%에서 81.6%로 제고

- 하수처리장 1백88개소, 하수관거 3천3백41km 신·증설

□ 수질오염 감시·단속

- 기존 인력, 장비를 모아 환경감시 전담기구 설치(99년 상반기)

- 환경경찰제 도입방안 강구

- 상습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 형사상 처벌기준 강화

2.2 쟁점 해결과정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90),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90년 1.0ppm(I 급수)이었던 팔당호 수질이 '98년에는 1.5ppm(II 급수)으로 나빠지면서 머지않아 III 급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어 팔당호 수질개선은 국민의 생명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대책만으로 팔당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하류간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지역 주민과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주민이 모두 만족하고 승자가 되는 Win-Win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팔당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98.8.25 일 정부의 팔당대책(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은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지역주민간, 상·하류지역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정부는 설명회, 공청회 및 지자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신뢰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수변구역 설정, 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이용부담금 징수,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쟁

점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2.1 팔당대책 수립과정 : 정부, 지자체, 주민간 불신 극복기

'98년 봄 팔당호의 수질이 BOD 2ppm까지 치솟음으로서 '98. 5. 1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총리특별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팔당상수원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받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안)을 '98.8.20 내놓았다.

하지만 '98. 8. 25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강원, 충북, 경기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장점거시위로 무산되었다. 새로운 대책만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후 환경부는 7회에 걸쳐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단,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책(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모두 11차례의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10만부), 민간단체 방문설명(10회), 지역신문광고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26회) 등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98. 11. 4 국민회의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이 주관한 지역주민대표와 자치단체장 및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주요사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공청회 무산이후 2개월여 표류해 왔던 팔당대책(안)이 정부대책으로 확정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 11. 20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13개 중앙부처와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차원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확정하였다.

2.2.2 한강수계법 제정 : 정부, 지자체, 주민간 신뢰 정착기

팔당대책의 주요 골간이 되는 수변구역 설정, 오염

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은 입법적 근거없이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97년 위천공단 문제 등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각 수계의 상·하류지역 출신의원간에 상충된 의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98.7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에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98년내에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 3당 전문위원 2명씩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98. 11. 20 팔당특별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사안들은 수도권지역 외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제화과정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전국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우선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진 한강수계를 대상으로 「수도권법」을 제정·추진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기초조사 및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에 따라 전국법으로 제정,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의원입법안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이 '98. 12. 3 국회에 상정되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주요당직자, 지역구의원,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야 협조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99. 1. 5)되고 법률이 '99. 2. 8일 제정되었다.

한강수계법 제정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신뢰가 정착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팔당대책을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부, 국회, 지자체 대표와 함께 법률안 조문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2.3 팔당대책의 추진과정 : 중앙·지방간 동반자관계 구축기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로 팔당대책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세부시행사항에 대한 정비 및 준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설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관련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과정에서 공동조사 등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거의 없었다. 반면 팔당대책의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들간 협의와 이해조정이 매우 힘들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을 놓고 수차례의 조정 회의를 거쳤다. 주민지원 및 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확대를 위해 요율을 높이려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요율을 낮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하류지역 자치단체들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환경부의 중재로 물이용부담금이 '99년 80원, 2001년에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1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이처럼 팔당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간 갈등과 이해를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3. 상 하류지역간 협력사업 전개

댐 건설에 따른 치수·이수상의 이익이 하류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상류지역은 하류 수해지역을 위해 수질보전상의 규제를 감수하거나 사방·치산사업 등을 통한 유역보전 노력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피

해의식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하류 수해지역은 그와 같은 상류의 감정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상 하류 문제는 댐 주변지역과 하류 수해지역간 교류의 부족에 기인하며, 장기적으로는 댐 건설사업 추진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하류주민은 댐 완료 후에도 평소의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연대의식을 배양해 갈 필요가 있다. 상 하류 간의 교류촉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댐 입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좋은 방안 도출을 위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겠다.

3.1 일본의 댐 주변지역 홍보사업 사례

댐주변지역의 홍보사업은 수원지의 역할, 현황에 대해 넓은 국민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직접 정보교환을 실시해 상호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성과 산림청은 1987년이래 매해 7월21일~7월 31일간 「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森と湖に親しむ旬間)」을 정하고 수원지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지역대책과 달리 직접적인 시설의 설치보다는 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댐을 이벤트의 장으로 만듦으로서 댐의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댐 견학회, 물고기 방류, 하이킹, 수상 스포츠 대회 등을 들 수 있다. 「숲과 호수에 친화되는 열흘」사업에는 1998년 현재 254개 소의 댐이 참가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78만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수원지의 역사·문화·민족 자료나 댐의 모형 등을 전시하고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등을 전하기 위해 댐 기념관·자료관을 정비함으로써 댐 방문객들에 대한 지역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의 행사 개요

	댐 수	참가자수	「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행사 댐			
			수 계 명	하 천 명	댐 명	지구명
1987년	165		利根川水系	鬼怒川	川治	關東
1988년	198	64만인	利根川水系	利根川	相模	關東
1989년	202	76만인	北上川水系	猿ヶ石川	田瀬	東北
1990년	230	92만인	淀川水系	宇治川	天ヶ川	近畿
1991년	214	73만인	録川水系	録川	録川	九州
1992년	232	91만인	駄川水系	駄川	野村	四國
1993년	212	55만인	石狩川水系	空知川	金山	北海道
1994년	221	67만인	木曾川水系	阿木川	阿木川	中國
1995년	238	71만인	江の川水系	江の川	土師	中國
1996년	222	71만인	信濃川水系	三國川	三國川	北陸
1997년	232	63만인	漢那福地川水系	漢那福地川	漢那	沖繩(おきなわ)
1998년	254	78만인	雄物川水系	玉川	玉川	東北

「숲과 호수에 친화되는 10일」사업의 주요 행사내용과 실시 댐수

행사내용	실시댐수	행사내용	실시댐수
댐견학회	187	삼림견학회, 삼림욕	27
낚시·물고기 방류	84	그림, 사진, 작문콘서트	23
퀴즈대회, 게임대회 등	76	불꽃놀이 대회	15
자연관찰교실, 목공교실	55	하이킹, 캠프	12
비디오, 영화, 패널전시	43	댐주변 식수, 파종	7
콘서트, 노래자랑	42	댐주변 청소	6
수상스포츠(카누 등)	34	상하류교류회	5
육상스포츠(테니스, 축구 등)	33	심포지움, 강연회	4
바자회, 노점	28	기타	54

주) 복수의 행사를 실시하는 댐은 행사마다 집계
 자료: 댐水源地環境整備センター, 1999, 21世紀の水源地ビジョン

3.2 한국의 2000년대의 낙동강생명찾기 운동 사례

상하류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낙동강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

- 생태계복원운동 / 「낙동강생명의나무연대」
- 낙동강 및 주요하천변에 생명의 나무 '버들' 심기

- 버들류 330,000그루, 창포 1,000,000 씨앗, 달뿌리풀, 갈대 등
- 2000년 3월~2003년 10월까지 3, 4, 5월, 10, 11월 식재
- 낙동강 본류 및 주요하천의 생태계복원지점, 하안보호지점, 제방보호지점, 지·세류유입지점, 수변식생대연결지점, 주요오염지역 및 사례지점 등이며 유수지장지 및 토사이동성지, 급경사면

지 등은 식재를 피함.

- 생활계생명문화운동 /「오!낙동강-, 하나됨을 위하여」

○ 낙동강동질성 회복 및 공동선(合力文化) 되찾기 운동

· 매년 10월을 '낙동강 새생명의 달'로 공동선포하고 공동행사를 활성화시켜 나갈

· 이를 위하여 생명심포지움, 생명대동제, 생명사진전, 생명영화제, 생명장승제, 생명기원제, 생명순례행사 등을 정례화하고 낙동강살리기 기원법종교계 특별기도 주간선포추진, 상·하류지자체간 자매결연추진, 1300만 낙동강주민 생명띠 잇기 큰잔치추진, 낙동강소하천 생명경연대회추진, 낙동강환경공동구역관리제도 추진 등을 실현시킨다.

· 이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2001년 10월(선포행사), 2002년 10월(발전행사), 2003년 10월(달성 및 정착행사)로 단계편성하여 3년간 실시한다.

3.3 상류(담주변)지역의 개발방향 설정

●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관광개발

· 일반적으로 댐 주변지역은 수변경관 및 수변공간이 조성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의 친수(親水)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외국의 경우 수자원개발사업 착수단계부터 레크레이션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제약이 크다

·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 지역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철저한 인센티브 제공과 오염자에 대한 비용부담 및 페널티부과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댐 주변지역의 우선개발지역 지정 및 "댐주변지역대책특별법(가칭)"의 제정

·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특수성과 다목적댐의 건설

로 인한 국가산업이나 국민들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국토개발에서 댐주변지역을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일본의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과 같이 "댐주변지역대책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댐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댐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 강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기금 제정

· 댐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이 강화된다면 사회적으로 무절제한 댐건설과 같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댐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댐으로부터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가능할 것임

· 이는 댐의 상류와 하류지역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댐으로부터 편익을 누리고 있는 하류의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이 기금을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경친화적·지역문화친화적 댐건설의 도입

· 정확한 사전적 평가를 거쳐 댐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연경관 및 동·식물의 서식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댐 건설을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자연복원시스템을 도입해 최대한 환경을 복원해야 함. 그리고 특히 댐 건설 사업 구역내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 즉 문화재, 마을기념물, 민속문화 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전 복원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전국 각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류활동의 내

용은 첫째, 하류주민에 의한 저수지 및 주변지역의 청소, 둘째, 상류지역의 농산물 등에 대한 하류지역의 정기적 구매, 셋째, 하류지역 시설 등의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제공, 넷째, 상류지역이 설치한 레크리에이션·휴양시설 등을 하류지역 적극적으로 이용, 또한 상류지역에 레크리에이션시설, 휴양시설 등을 건설, 다섯째, 학교 교재, 커리큘럼, 사회견학 등으로 수원 시설 또는 수자원 문제 등을 다루는 것, 여섯째, 상류지역에서의 축제나 모임 등을 통해 하류지역과 교류를 촉진, 또는 하류지역의 축제나 모임을 통한 상호교류, 일곱째,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수자원개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4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을 매개로 하여 수자원시설 입지(예정)지역을 알리는 일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역관광/문화/시설 등을 같은 생활권의 수혜지역 주민들

과 대도시지역에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댐 운영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휴식, 드라이브 코스, 사계절 변화 등 댐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상하류의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상하류 교류 추진의 필요성과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인 물문화재단을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전의 원자력문화재단 등 선진기업으로부터 각종 사례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댐건설지역경제활성화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 연구, 2001
2.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생명찾기 백서 1998
3. 일본의 수자원, 2000
4.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수자원전망에 관한 연구, 1997
5.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관리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및 협력방안, 1995